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에 관한****보건부 공고**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불기 2565년(서기 2022년) 화장품법(제2호)로 개정된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의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6조 제12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화장품위원회 제2차 회의의 자문과 2025년 1월 21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화장품 심사 절차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본 공고에 첨부된 목록과 같이 정한다.

제3조 본 공고에 첨부된 목록에 따른 수수료는 5년마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할 수 있다.

2025년 6월 25일 공고

씀싹 텁쑤틴

보건부 장관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에 관한

보건부 공고에 대한 부록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목록 1 학술 자료의 평가 및 시설 검사

항목	단위	최대 수수료 (바트)
<b>1. 학술 자료의 평가</b>		
(1) 화장품에 사용된 이력이 없는 성분, 물질, 성분의 기능 또는 기술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전문가에게 의견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	1 건당	40,000
(2) 제조자의 요청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	1 건당	13,000
<b>2.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 수입 또는 위탁제조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설 검사</b>		
(1) 화장품의 제조, 수입 또는 위탁제조에 대한 인증서의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시설 검사	1회당	26,000
(2) 시설 검사(화장품의 제조, 수입, 위탁제조 또는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1회당	26,000
(3) 시설 또는 서류 검사(화장품의 제조, 수입, 위탁제조 또는 보관 장소 허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회당	2,000
(4) 제 16 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한 시설 검사(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미 식품의약품청 지방 보건서에 신고한 제조 장소 또는 수입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1회당	3,200
(5) 제 35 조에 따른 수출용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한 시설 검사(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미 식품의약품청 또는 지방 보건소에 신고한 제조 장소 또는 수입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1회당	3,200
<b>3. 아세안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ASEAN Cosmetic GMP)에 따라 식품의약품청이 지정한 평가자가 실시하는 시설 검사</b>		
(1) 아세안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ASEAN Cosmetic GMP)에 따라 화장품 제조 또는 위탁제조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설 검사	1회당	60,000

항목	단위	최대 수수료 (바트)
(2) 아세안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ASEAN Cosmetic GMP)에 따라 화장품 제조 또는 위탁제조 시설에 대한 인증서 갱신을 위한 시설 검사	1회당	50,000
<b>4. 아세안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ASEAN Cosmetic GMP)에 따라 평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시설 검사</b>		
(1) 제조 시설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설 검사	1회당	100,000
(2) 제조 시설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후 시설 검사	1회당	80,000
(3) 제조 시설 현장에서 실시하는 갱신을 위한 시설 검사	1회당	80,000

- 비고** (1) 평가단의 출장비 및 숙박비에 관한 비용의 경우, 목록 1의 항목 2, 항목 3 및 항목 4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
- (2) 목록 1의 항목 2, 항목 3 및 항목 4에 따른 화장품 제조, 수입 또는 위탁제조 시설에 대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목록 2 목록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심사 또는 검사**

항목	단위	최대 수수료 (바트)
<b>1.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의 지원</b>		
(1) 허가와 관련된 문서의 심사 및 조회(문서 사본 발급 및 서류 운송비는 제외)	1 건당	2,000
(2) 서면으로 회신하는 심사, 진단 또는 인증	1부당	4,000
(3) E-submission 시스템 상의 신청 정보 입력에 대한 심사(신청인이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1부당	
1)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신청	1부당	2,500
2) 첨부서류가 필요한 제품 신청	1부당	5,000
<b>2. 마크 발급에 대한 심사</b> 예) FDA 태국 허브 심볼	1부당	7,000
<b>3. 인증서 발급에 대한 심사</b>	1부당	
(1) 각종 인증서의 대체 발급	1부당	200
(2) 각종 인증서 또는 증명서의 사본 인증	1부당	200